

문서번호	지역보건과-38 87
결재일자	2016.3.4.
공개여부	대시민공개
보도여부	

주무관	가족건강팀장	지역보건과장	보건소장
고은상	박애숙	정은경	03/04 이인영
협 조			

2016년 1/4분기 산후조리원 점검계획

2016.3.3.

강북구보건소
(지역보건과)

2016 1/4분기 산후조리원 점검계획

산후조리원을 대상으로 인력·시설 및 감염관리 점검을 실시하여 임산부 및 영유아의 질병 감염과 화재 등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

I 추진근거

- 모자보건법 제15조의7(보고·출입·검사 등)
- 2016년 모자보건사업안내(산후조리원 감염 및 안전사고 예방)

II 점검개요

- 점검기간 : '16. 3.14(월) ~ 3.16(수) 기간 중 실시
- 점검방법 : 현장방문 확인점검
- 점검반 : 2인 1조 1개반
- 점검내용 : 시설, 인력, 건강기록부, 위생상태,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실시 여부, 감염예방 등 교육 이수 여부, 책임보험 가입여부 등
- 점검대상 : 4개소

명칭	소재지	전화번호	정원 (영아/산모)	연면적 (㎡)
아가엄마산후조리원	강북구 한천로 1041, 2층(수유동)	999-8275	8/8	267.30
동그라미산후조리원	강북구 삼양로 184, 6층(미아동)	988-0838	21/21	892.39
햇빛 산후조리원	강북구 덕릉로 113, 8~10층(번동)	983-1511	24/24	1,163.50
에비뉴산후조리원	강북구 도봉로 136, 7층(미아동)	985-3542	18/18	655.20

① 산후조리원 인력 및 시설기준 준수여부

- 건강관리책임자 지정 여부
-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인력기준 충족 여부
- 시설 및 인력기준 적정여부 조사 :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활용
 - 조사기간 일평균 산모수 및 영유아수 대비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종사자수
- 영유아실, 급식시설, 세탁시설 등 적정 여부

② 임신부 및 영유아 건강기록부 비치 및 건강상태 기록·관리여부

- 임신부·영유아 건강기록부 비치 및 건강상태 기록·관리 조사
 - 건강상태 의무기록 여부 : 임신부(1일 1회), 영유아(1일 3회이상)
 - 감염이 의심되거나 의료기관 이송 시 상세 기록 확인
 - 건강기록부 보관기간 준수여부 : 1년

③ 의료기관 이송 등 필요조치 여부, 이송시 관할 보건소장에게 보고여부

- 임신부 및 영유아 감염 또는 질병의심 발생 시 즉시 의료기관 후송 등 필요 조치 이행여부
- 의료기관으로 이송한 경우, 이송사실을 지체 없이 보건소장에게 서면으로 보고 여부 - 모든 입원 건 및 일부 외래 건을 보고
 - ※ 외래 이송보고는 감염질환으로 진단받은 경우, 감염질환이 의심되어 검사한 경우에 한함
- 위반사항 적발 시 : 과태료 부과(100만원)

④ 산후조리업자·종사자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실시 여부

-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대상 : 산후조리업자 및 종사자
- 산후조리업자 및 산후조리원에 종사하는 자 건강진단서 확인
 - 건강진단 주기 : 연1회 이상
 - 건강진단 항목 : 장티푸스, 폐결핵 및 전염성 피부질환

- 신규 종사자 채용시 채용 전 1개월 이내에 건강진단 실시 여부
- 건강검진 미필시 대표자에게 과태료 부과(170만원)
- ※ 예방접종 의무화 : 2016.6.23.부터 시행

5 산후조리업자의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

- 감염예방교육 이수여부 확인 : 2년마다 1회 이상(업자 또는 건강관리책임자)

6 산후조리원 책임보험 가입 여부

- 산후조리원 이용으로 인한 감염 등 사고 발생시 이용자의 손해를 보상할 수 있는 책임보험에 가입

7 감염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기본사항 준수여부

- 감염·질병 예방, 소방, 안전을 위한 점검실시 여부
 - 일일자가 점검표, 소독필증, 전기·가스점검필증,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등 확인
- 감염관리실무 점검
 - 감염 사정 및 손위생, 환경관리 적정여부, 세탁물과 폐기물관리, 물품소독 적정 여부, 방문객관리, 신생아 수유·목욕 적정 여부 등

8 기타

- 모자보건법령 개정사항 시행('16.6.23) 안내
 - 건강진단외 예방접종 의무 시행
 - 중도해약 시 환불기준 공개 의무화 시행 안내
- 국가안전대진단 자체점검 홍보 및 안내
- 2016년도 모자보건사업 지침 변경사항 안내
 - 산후조리원에서 보건소에 보고할 사항 안내
 - 보고 사항 : 산후조리원 이용산모수, 감염병 발생 현황
 - 보고 시기 : 1년 2회 보고, 6.30일, 12.31일 이후 7일 이내
 - 의료기관 이송보고 신고 : 모든 입원에 일부 외래 건 추가 보고 대상 확대

- 점검표 및 사전점검안내문 발송
 - 사전에 자가점검실시 안내(산후조리원 실태조사서에 의거 실시)
 - 사업장 4대보험 가입자 명부 사전 발급 요청
 - 최근 3개월('15.12월~'16.2월) 기간중 임신부영유아 현황 자료 사전 준비

- 위반시 조치사항
 - 위반사항 발견시 확인서 징구 모자보건법에 의거 행정처분
 - 행정처분 등 점검결과 공개
 - 공개방법 : 구청 홈페이지(사전공표)
 - 공개내용 : 업소명, 소재지, 위반사항, 처분결과

붙임 산후조리원 실태조사서 1부. 끝.